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 대회 격려금 운영 내규

제정 2026. 4. 30.
개정 2026. 8. 11.

제1조(정의) 이 내규에서 “대회 격려금”이란 광주광역시 북구 관내 소속 선수 또는 동호인이 전국대회 등에 참가하거나 회원종목단체가 협회장배(기)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, 임원·지도자·선수·동호인 등을 격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말한다.

제2조(목적) 이 규정은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북구 대표 선수단의 사기를 진작하고, 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격려금 및 격려품 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지급대상) 격려금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광주광역시 북구 대표 또는 본회 소속 회원종목단체 자격으로 전국대회, 시·도 단위 대회,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주관 대회 등에 참가하는 임원, 지도자 및 선수
2. 본회에 등록된 회원종목단체 중 협회장배(기) 대회를 개최하는 단체
3. 그 밖에 회장이 북구 체육 진흥 및 대회 참가·개최 격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

제4조(지급기준) ① 격려금은 본회 예산 편성 범위 내에서 [별표 1]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대회 규모, 참가 인원, 예산 상황, 대회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부결재를 거쳐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증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급방법) ① 격려금은 해당 회원종목단체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다만, 대회 현장의 격려 필요성, 계좌 지급이 곤란한 사정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개인 계좌로 지급하거나 대회장에서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직접 전달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급대상자, 지급일자, 지급금액, 지급사유를 명확히 하고, 수령확인서, 참석사진, 대회요강 등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.

③ 격려금을 지급받은 개인 또는 단체는 대회 참가신청서, 대회요강, 수령확인서, 입금증빙, 참가사진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,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급 제한 및 환수) ① 동일한 대회 참가 또는 개최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체육회, 지방자치단체, 기타 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목적의 격려금 또는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 여부 또는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.

② 격려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개인 또는 단체는 동일 목적의 지원 여부를 본회에 성실히 고지하여야 한다.

③ 허위 신청, 대회 불참, 증빙자료 미제출, 목적 외 사용 또는 그 밖의 부적절한 방법으로 격려금을

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격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④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회는 해당 개인 또는 단체에 환수 사유, 환수금액 및 납부기한을 통보하여야 한다.

부 칙(2026. 4. 30.)

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방침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6. 8. 11.)

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방침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 1】<개정 26. 8. 11.>

격 려 금 지 급 기 준

구 분	지급기준	금 액
◈ 해당연도 대한체육회 및 체육관련 단체에서 개최 종목으로 통보된 종목 ◈ 북구체육회 종목단체 협회장배(기) 각 종 대회 개최	참가인원 15명 이하	200,000
	참가인원 16~30명 이하	300,000
	참가인원 31명 이상	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 내부결재에 따라 지급 가능
	정회원단체	500,000
	준·인정단체	200,000

※ 격려금은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.
※ 동일 목적의 보조금, 지원금 또는 격려금을 중복 지원받은 경우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.
※ 대회 규모, 참가인원,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내부결재를 거쳐 지급금액을 증감 지급 할 수 있다.